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2. 11. 29.>

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·운영계획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
제출인	기관명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(사무실)	(전화번호:)	

처리시설 설치예정지	(전화번호:)
시험·연구기관	년 월 일 ~ 년 월 일(년 월간)
시설사용기관	년 월 일 ~ 년 월 일(년 월간)

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명	시설규격 (능력: kg/일)	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	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(톤/연)	방지시설명	시설설치비용 (백만원)

시험·연구목적

폐기물 반입계획	배출업소	폐기물 종류	반입량(kg/일)

폐기물 보관방법

설치자 구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7조제1항 □제1호, □제2호, □제3호, □제4호, □제5호, □제6호, □제6호의2, □제8호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·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처리절차					
계획서 작성	→ 접수	→ 검토(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)	→ 결재	→ 검토결과 통보	
제출인		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